「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미시 도시숲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～제14조)

라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～제18조)

마. 가로수 진단조사, 시민참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제21조)

바. 관리 위탁, 사무의 위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～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합　　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조례안은**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미시 도시숲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**검토 결과,**

-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,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설치,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문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, 특히 가로수 조성·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관내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